

동절기 임대상가 안전점검 계획(안)

동절기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대상가 일제 안전점검 및 계도를 시행코자 함.

I 관련근거

□ 부대사업규정 시행내규 제60조(지도점검)

- 역장 및 서비스지원사업소장은 별표2 부대사업 시설물 관리 기준표에 따라 상시 지도 점검

□ 계약서 16조(준수사항) 및 20조(안전 및 시설관리)

- 전기 이외의 석유 등 폭발성, 인화성 물품은 반입 및 사용 불가
- 전열기 등 화재 및 안전과 관련된 기기 사용 시 임대인 사전승인
- 소방관계 법령에 의거 방화관리 및 소화장비를 비치·점검
- 화재 및 안전방재 교육 실시, 임대인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여

II 안전점검 계획

□ 목 적 : 동절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계도로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조성

□ 안전점검

○ 부대사업처

- 임차인에게 안전점검 실시 및 화재사고 예방 협조 공문 발송
- 수시 화재 예방 철저 협조 문자 전송

- 서비스지원처 : 하반기 임대상가 정기점검과 병행시행
 - 합동점검 : 서비스지원처 + 부대사업처 + 상가조성단 + 서비스지원사업소
- 서비스지원사업소(역) : 화재사고 예방 협조 문서 부착 협조
 - 부착위치 : 임차인 또는 종업원 상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
- 해당역 : 화재예방 협조 문서를 각 상가 내 부착으로 안전의식 고취 및 상시 점검 실시

Ⅲ 점검결과 조치

□ 점검내용

- 미승인 전열기구 사용 여부
- 각종 소방시설 적정 여부(소화기, 감지기 등)
-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
- 소화기 등 소화장비 점검 및 관리 실태
- 영업종료 시, 각종 전열 콘센트(냉동고 등 제외) 전원 차단
- 기타 화재발생 요인 여부 등

□ 점검양식 : 임대상가 정기점검표에 의거 시행

□ 점검결과 조치

-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요구 : 점검반 → 임차인 또는 종업원
- 점검결과 시정요구(문서)
 - 전열기, 콘센트, 소화기 등 : 서비스지원사업소 → 임차인
 - 비상유도등, 감지기, 스프링클러 등 : 상가조성단 → 임차인
- 기한내 미 조치 시 즉시 서면경고 조치 후 위약제재금 부과

- 서면경고 : 서비스지원자사업소, 상가조성단 → 임차인
 - 위약제재금 부과 : 부대사업처 → 임차인
- ※ 화재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 상가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 가능.